

# 한미FTA 저지투쟁은 계속된다!

비준안이 통과되면, 더 길고 고된 조약폐기 투쟁이 기다릴 뿐

이상훈 | 정책위원

## 한미FTA가 날치기 통과 직전! 하지만 안타까운 투쟁 현실

한미FTA 비준안 처리가 오늘내일 한다. 미국 오바마가 지난주에 먼저 FTA안에 사인해버리자, 다급해진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며칠 남지 않은 10월 중에 국회 비준안 처리를 강행할 작정이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국회본회의장에 서 막겠다고 하지만 역부족이다. FTA 원조당인 민주당이 온몸을 던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진정 안타까운 것은 유일한 희망인 대중투쟁이 지지부진한 현실이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대한문 앞 노숙단식이 3주째 계속되고 있지만, 대중투쟁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FTA투쟁의 주력이었던 농민대오가 가을철 농번기를 맞았고, 민주노총은 전반적인 대중운동 침체의 수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미FTA는 이미 끝난 사안”이라는 식의 관성적이고 패배주의적 태도가 만연한 탓이다.

## 한미FTA를 숨기는 선거운동

서울시장 선거가 FTA를 숨기는 선거 전략을 택한 영향도 적지 않다. 진보양당과 민주노총이 박원순 선분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나섰지만, 정작 박 선분은

앞장서서 FTA반대를 주장하기는커녕 한미FTA 관련 입장을 숨기는 데 힘썼다. TV토론에 출연한 박원순 후보는 나경원후보가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이냐”고 집요하게 따졌지만,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말만 하고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했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sup>1)</sup> 무엇을 위한 야권연대이고, 무엇을 위한 선거승리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판이다. 한미FTA에는 눈감고 일단은 선거에 이기고 보자는 생각은 기회주의적일 뿐 아니라, 사리에도 맞지 않는다. 한미FTA가 통과된다면, 설령 어떤 진보적인 지도자가 서울시장이 되더라도, 이후에 재벌과 미국자본에 맞서서 진보적인 정책을 펼치기 어렵기 때문이다.<sup>2)</sup> 더욱이 한미FTA를 찬성하는 여론이 다수여론이라면, 그것을 바꾸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일이지, FTA관련 입장을 숨길 일이 아니다. 한미FTA는 유치한 학력논란이나 아파트 월세 논란, 1억짜리 피부관리숍 같은 네거티브 선거쟁점들보다 크고 중요한 문제이다. 이런 네거티브 선거쟁점들의 이면 어딘가에 심오한 계급전쟁의 참뜻이 숨어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나라를 송두리째 팔아넘기는 한미FTA 날치기가 목전에 있는 마당에, 선거만 이기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우리들의 소중한 정치역량을 한미FTA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그것을 막아내는 데 집중해야 할 때이다.

---

1) 비슷한 맥락에서 김진표 민주당원내대표는 얼마 전에 FTA농성장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속내를 밝혔다. 그가 말하길, “민주당은 ‘MB정권의 한미FTA’를 반대한다. 하지만 온몸을 던져 FTA를 반대하는 것은 이번 서울시장선거와 내년 총대선의 승리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본다.” 야권연대로 얻을 수 있는 표는 좋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4~5% 수준의 가치를 지닐 뿐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는 “한미FTA를 반대해서 정권만 잡는다면, 한미FTA가 아니라 그 할아버지라도 온몸으로 반대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목표는 야권연합을 통한 집권일 뿐이고, 한미FTA반대 같은 진보정책은 당선 이후의 일일뿐이라는 생각이다.

2) 지난 10월22일 국회토론회에서 서울시 정책과 직접 관련된, 한미FTA에 대한 정부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그동안 알려진 바와 다르게, 미래의 공공정책결정권이 결코 포괄적으로 유보되지 않았고, 전기 수도 통신 등 공공부문도 미국 기업의 제소대상으로 되어 있다. 이들 공공부문 관련 서울시 정책은 한미FTA에 직접적으로 구속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누가 시장이 되건, 시장의 권한으로는 바꿀 수 없는 사항들이다.

## 비준통과 되더라도 끝날 수 없는 투쟁이라면, 한미FTA저지 투쟁에 남은 총력을 기울여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한미FTA투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투쟁인지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하여 우리의 투쟁태세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한미FTA의 본질이 국가이익이 아니라 계급이익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한미FTA는 양국 간의 무역이익을 조정하는 단순한 무역 관세협정이 아니다.<sup>3)</sup> 한미FTA는 세계경제위기에 내몰린 초민족적 자본이 제 살길을 찾기 좋게 제 입맛대로 남한사회 전반을 구조조정 하는 정책 패키지다. 미국 자본만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재벌 또한 한국경제의 주체가 아니라 초민족적 자본의 지위를 누린다.<sup>4)</sup> ‘국익’이 아니라 ‘계급’이 본질이다.<sup>5)</sup> 한미FTA는 한국재벌을 포함

---

3) 또한 한미FTA는 명백한 불평등 협정이고, 국민주권을 팔아먹는 매국 협정이다. 118개 항목들 중에서 미국자본의 의도가 그대로 관철된 것이 97개 항목일 만큼 한미FTA는 불평등한 협정이다. 특히 투자자-국가소송제와 같은 독소조항들은 한국 국민들보다 미국자본의 이익을 더 앞세워 보호하는 굴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말 그대로 주권 포기협약이다. 더욱이 미국자본만이 아니라 간단한 공동투자절차만 거치면 어느 나라의 자본이건 미국자본과 동등한 지위를 누리게 된다. 국가간 불평등뿐 아니라 자본민중간 불평등이 제도화되는 것이다.

또한 한미FTA가 통과되면 영리병원이 무차별하게 허용되고, 제약 특허권 무한 보호정책 등으로 인한 의료비, 약값 인상, 기초 공공서비스들의 민영화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조치들은 개혁개방이 이루어지기 이전 상태로 다시 되돌릴 수 없고, 개별 항목들에서 특별히 언급되지 않은 내용들은 미국자본의 입맛대로 개혁개방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4) 한국의 재벌은 이미 절반 가까이 외국인이 지분을 소유한 초민족적 자본이다. 거기다 한미FTA가 통과되면, 재벌은 간단한 공동투자형식만 갖추면 투자자-국가소송조의 특권을 이용해서 각종 재벌규제 정책을 무시할 수 있고, 가스 발전 철도 등의 공공부문을 소유할 수도 있고, 공공의료정책을 무력화하는 영리병원을 마음대로 지을 수도 있다.

5) 실제로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는 협정체결 10여 년 만에 외국인 직접투자가 4배 이상 늘고, 수출도 2배가량 늘었지만, 실질임금은 오히려 7.9% 낮아졌고, 실업률도 5.4%늘었다. 이미 미국 현지 공장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고, 많은 부분이 멕시코와 다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멕시코보다 FTA의 외형적인 경제적 효과가 그리 크지도 않다. 정부 측 주장은 10년간 GDP 5.7% 증가예상이지만, 이진 지나친 과장에 불과하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전망은 높게 잡아도 10년간 0.2~0.3% 증가에 불과하다. 하지만 멕시코에

한 초민족적 자본이 국경을 넘어, 노동자 민중을 보다 효과적으로 쥐어짜내기  
쥬게 남한사회를 재편하는 총체적 정책, 전략이다.


그러니 한미FTA 비준안이 통과된다고 사태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다. 미  
국은 한미FTA를 발판으로 일본과 호주를 포함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sup>6)</sup>으로 더 큰 전략을 추진할 것이고, 한국사회의 진정한 1%인 재벌과 정  
권은 미국의 새로운 세계전략의 우산 아래에서 '소유권 절대'의 이념을 구체화  
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다. 다시 말해 비준안 통과가 최악의 끝이 아니다. 실  
제 재편이 이루어지는 최악의 상황은 비준안 통과 이후에 이곳저곳에 분산된  
삶의 현장들에서 펼쳐질 것이다. 한미FTA 국회비준안 저지투쟁은 그렇게 각  
개 격과 당하기 전에, 함께 뭉쳐 싸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이대로 국회 비  
준안 처리를 힘없이 지켜보고 만다면, 이후 우리의 삶과 투쟁은 그만큼 더 고  
단해질 뿐이다. 아무리 늦었더라도 아무리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함께 모일 수  
있을 때, 모일 수 있는 만큼 싸워야 한다.

비준안이 언제 통과되는 지도 중요하지 않다. 국회의사 일정상의 기술적  
인 문제는 다수의석을 가진 한나라당의 마음이다. 한나라당의 의지가 불분명

---

서 나타난 계급 불평등의 심화와 신자유주의적 사회개조의 파괴적 효과는 그대로 답습될 것이다.

- 6) TPP는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환태평양전략경제동반자협정) 혹은 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라고 불린다. 원래는 2005년에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었다. TPP는 창설 초기에 별 영향력이 크지 않았으나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선언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TPP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에 있어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과 미국을 연결해 주는 고리라고 평가한 바 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정 가입을 추진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신세계질서 전략이 크게 작용한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 이 협정에는 상품 거래, 원산지 규정, 무역 구조조치, 위생검역, 무역에 있어서의 기술 장벽, 서비스 부문 무역,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및 경쟁정책 등 자유무역협정의 거의 모든 주요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 2008년 2월 미국이 이 협정에 참여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였고, 그해 8월 호주, 베트남, 페루가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2010년 10월 말레이시아가 참여를 선언하였다. 2010년 현재 협상을 벌이고 있는 다섯 나라 외에도 캐나다, 일본, 필리핀, 대만, 한국 등이 협정 참여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 한미FTA는 한미FTA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나아가 이 TPP의 주요한 발판으로 기능하면서, 일본을 효과적으로 끌어들여 세계경제위기 이후 미국의 새로운 세계경제전략을 구체화하는 역할이 부가된다.

하면 모를까, 그들은 한미FTA를 양보할 뜻이 조금도 없다. 국회 의사일정이나 몇몇 기술적인 협상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대중투쟁 일정을 중심으로 작고 큰 투쟁계획을 줄기차게 이어 가야 한다. 유일한 관건은 국회 밖의 대중투쟁의 규모를 얼마만큼 높여낼 수 있느냐다. 국회 본회의의 FTA법안이 비준된 후에 규탄할 것이 아니라, 그전에 비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감히 날치기 처리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는 대중투쟁을 만들어가자! 우리가 비준안 저지 투쟁에 얼마큼 힘을 쏟느냐에 따라 이 피치 못할 투쟁의 조건이 변화한다. 

## 〈보론〉

막아야 하고, 막지 못하면, 앞으로 폐지하기 위해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한미FTA 독소조항들

### 1. 투자자-국가 제소제도(ISD)

투자자-국가 제소제도(ISD)는 강력한 독소조항 중 하나다. 미국 투자자는 언제든 한국정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에 제소할 수 있다. 반면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투자자는 미국정부를 제소할 수 없다.<sup>7)</sup>

이 조항과 관련된 국회 끝장토론에 나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 조항이 투자유치를 위한 조항이라고 옹호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약을 만든다는 것은 공동선을 위해 주권 중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라는 충격적인 주권포기 발언을 했다.

### 2. 간접수용

한미FTA에는 우리나라 법체계에는 없는 ‘간접수용’을 인정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간접수용이란 투자자의 자산 가치를 떨어뜨릴 만한 모든 정부의 조치를 직접수용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다. 따라서 각종 정부 규제, 정책에 의해 투자

---

7) 오바마가 미 의회에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을 보면, 제102조 (c)항에 이렇게 되어 있다. “미국 정부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근거로 청구권이나 항변권을 갖지 못한다. 미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한-미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ISD는 그 자체로 주권침해 조항인데다가, 일반적으로 불평등하기까지 하다.

자의 자산 가치 하락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 정부가 자신의 재산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정부를 상대로 재판을 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보다 더 완벽한 '소유권 절대' 제도가 있을 수 없다. ISD제도와 이 간접수용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더 이상 땅값, 주식 값을 떨어트릴 만한 공공정책들을 사실상 포기해야 할 판이다.

### 3. 역진 방지 조항

역진방지조항(래킷<sup>8)</sup>조항)은 한번 개방-개혁된 사항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이 역시 정부정책 결정권을 제약하는 전형적인 주권침해조항이다. 앞으로 한미FTA로 인한 각종 폐해들에 맞선 우리의 투쟁이 사사건건 발목 잡히게 될 조항이기도 하다.

### 4. 금융시장 완전개방의 재확인

한미FTA는 금융시장의 완전한 개방과 자유화를 실현한다. 또한 개방해야 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포지티브 방식)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등재하는 포괄주의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 시장들은 무조건 개방해야 한다.

물론 이미 한국의 금융자유화 정도는 더 개방할 것이 남지않은 정도로 높다. 다만 한미FTA는 세계금융시장이 나날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추가적인 대응조치 완전히 봉쇄하는 독소조항을 추가한다.

---

8) 래킷은 톱니바퀴가 거꾸로 돌지 않게 하는 역진방지 장치의 명칭이다.

## 5. 허가-특허 연계조항

국내 제약업계 대다수는 오리지널약이 특허 만료된 뒤 나오는 복제약을 생산한다. 그런데 허가-특허 연계조항이란 복제약을 만들어 식약청에 시판승인을 요청할 때, 이를 특허권자에게 통보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것이다. 통보를 받은 특허권자는 이런 저런 핑계를 들어 소송을 제기, 복제약의 시판을 늦춤으로써 사실상 특허연장의 실익을 누리하고자 한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의약품소비자는 비싼 약값을 지불해야 한다.

이처럼 의약품에 한해, 기본적으로 사권(私權)에 불과한 특허권을 국가가 나서서 보호하라는 말이다. 이것이 시행되면 약값이 인상되고, 미국의 제약회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누리게 된다. 기본적으로 서민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심하게 제약하는 이 조항은 미-파나마, 콜롬비아FTA에서는 재협상을 통해 삭제된바 있다. EU에서도 이 조항은 허용되지 않는다. 2010년 12월 재협상과정에서 허가-특허 연계조항에 대해 3년 유예를 받았다고 정부는 자랑한다. 그러나 이는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 6.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TRIPs+), 인터넷 사이트 폐쇄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 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또한 한미FTA에 의해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다. 세계에서 처음이다. 물론 미국은 아니다. 한국의 해당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다는 말이다.



## 7. 세이프 가드 조치 금지

외환위기와 같은 비상상황에서 정부는 긴급 외환송금 제한조치 곧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제한조치를 취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미합중국의 상업적, 경제적 또는 재정 상의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미국에 투자한 한국 자본이 손해를 볼 때, 미합중국은 그럴 의무가 있을까? 없다. 대한민국 정부만의 일방의무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외국인 직접투자와 연계된 지급 또는 송금”은 제한할 수도 없다. 예컨대 KT의 대주주는 미국계 사모펀드다. 이 펀드는 2002년 KT가 민영화된 이후 사실상 KT의 최대 주주다. 매년 수 천억에 달하는 배당금을 송금한다. 하지만 이들은 ‘직접투자’에 해당되므로 송금을 제한할 수 없다.

## 8. 비(非)위반제소


FTA를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 민간 기구에 상대 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 한다. 예컨대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9. 공기업 완전 사유화와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들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맞춤형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 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의 인상을 피할 수 없다.

## 10. 대책 없는 농업포기정책

정부가 대놓고 인정하는 한미 FTA 피해 분야가 농업이다. FTA체결 이후 눈에 보이는 대략적인 피해만 10여 년간 12조 이상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피해대책은 ‘농어민 폐업 지원 제도’다. 사람을 살려 달랬더니 장례지원정책을 대책이랍시고 내놓은 꼴이다. 기후변화, 세계경제위기로 국제 식량위기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농업 포기정책은 단순히 농업피해액수 12조 원을 다른 곳에서 벌충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 카길(Cargil) 같은 초민족적 농업자본은 어느 나라의 국가의 정부들보다 해당 국가에 식량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식량 공급가격을 차별화하여 공급한다.

그 외 한미FTA는 <미래의 최혜국대우 조항<sup>9)</sup>>, <스냅백 조항<sup>10)</sup>> 등과 같은 수많은 독소조항들을 담고 있다. 

---

9) 미래의 다른 나라와 다른 조약을 맺을 때, 미국에게 개방하지 않았던 품목을 개방하면, 자동으로 미국에게도 개방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10) 스냅백 조항은 한국정부가 자랑했던 자동차 수출관세 인하를 미국정부가 무효화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한국이 자동차관련 한미FTA 협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은 자동차 수입관세를 되살린다. 협정의무 위반시 대개 시정조치를 취하거나 혹은 보상을 하면 된다. 하지만 한미FTA는 없애버린 관세를 다시 되돌리는 조항을 만들어 넣은 것이다.